1. 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)

2. 시행일: 2024.12.30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대출거래약정서(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) 개정안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대출거래약정서 **(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)** **제1조 거래조건** ⑨ **상환방법** •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이자는 월지급금의 지급시기에 납입합니다. •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. 다만, 제4조에서 정한 조기만료 사항이 발생되면 전액 상환합니다. · (단서조항 신설) **제4조 대출금 지급의 조기만료**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고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본인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, 제1조 제5항의 대출기한일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대출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. (단서조항 신설)	**대출거래약정서** **(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)** **제1조 거래조건** ⑨ **상환방법** •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이자는 월지급금의 지급시기에 납입합니다. • 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. **다만, 제4조에 따라 대출금의 지급이 조기만료한 때에는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. 이 경우 위 대출금 지급 조기만료와 대출금 상환에 대한 사항은 공사가 본인에게 통지합니다.** · **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, 이후의 이자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** **제4조 대출금 지급의 조기만료**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고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**공사로부터 사유해소 요청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고, 공사가 별도로 통지한 기한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** 제1조의 '대출기한일'에 불구하고 제1조 '대출실행방법'의 대출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. **다만,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제2조의 '대출금'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유해소 요청 등이 없이 공사로부터 대출금 지급의 조기만료가 서면으로 통지되며 대출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.**	주택연금 대출사후관리업무 특성에 맞추어, 제4조1항 각 호의 사유* 발생시 고객통지 주체(공사) 및 절차(사유해소요청 등) 명시 *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 (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 2)

1.~ 9. (생 략) **제7조 채권의 행사범위** (생 략) 1. ~ 2. (생 략) 3.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사망 등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출금 4. (생 략)	1.~ 9. (생 략) **제7조 (채권의 행사범위)** (기존 동일) 1. ~ 2. (기존 동일) 3.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사망 등 제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출금 4. (기존 동일)	